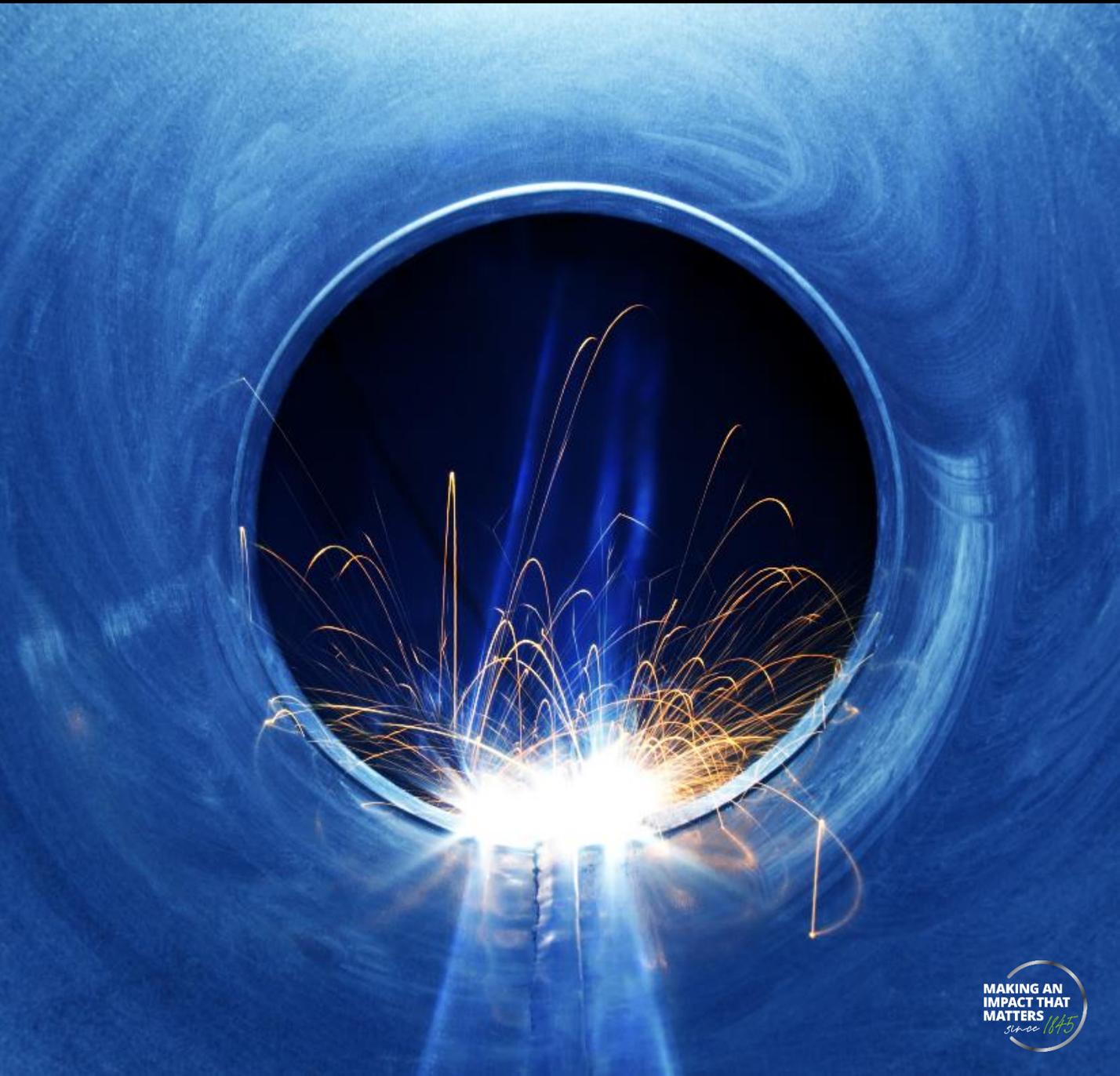


Deloitte.

세무관세 뉴스

2023년 4월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주목할 만한 내용:

조세행정

- 계산서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기업 확인기준
- 2023년 부가가치세 (VAT), 법인세 (CIT), 개인소득세 (PIT) 및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 연기

법인소득세 ("CIT")

- 생산과정의 불량품 폐기
- 유통업체의 소매점에 대한 현금 지원
- 공장 임대 활동에 대한 CIT 인센티브
- 투자 기간의 환율 차이로 인한 소득은 CIT 인센티브 대상이 아님

무역 및 관세

- 특별한 수출입 상품 목록 업데이트
- 통관 후 관세심사활동에 대한 업데이트
- 재수입 수출품은 여전히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 수입품에서 발생한 수출 스크랩은 여전히 수출 관세가 부과됨
- C/O Form D 적용 관련 유의사항

간접세 ("VAT")

- 2023년 부가가치세 ("VAT") 감소에 대한 결의 초안
- 종속단위에서 사용하는 계산서에 대한 규정
- 해외조직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VAT
- 두 단계로 분리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 비관세구역에 건설공사 서비스에 대한 VAT 환급

근로자 및 개인소득세 ("PIT")

- 사회보험 가입 절차 및 사회보험료 연체납부 또는 납부 회피 처리 절차에 대한 개정
-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입국, 출국, 국경통과 및 체류 관리에 관한 일부의 정책에 대한 결의안 초안
- 근로자에게 상 수여에 대한 PIT 공제
- 상품홍보를 위한 개인의 채용에 대한 PIT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베트남에서 창출한 외국인 계약자의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 ("DTA") 적용
- 해외시장으로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는 FCWT의 대상이 아님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사용가능



조세행정 신규 규정

계산서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기업 확인기준

세무총국 ("GDT")은 2023년 2월 2일에 계산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위험이 있는 납세자 평가 및 확인 기준에 대한 제78/QD-TCT호 결정을 발표했다. 이결정은 서명일로 부터 유효되며 계산서에 대한 위험 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 그룹 I. 인증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에서 인증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납세자를 결정하는 기준.
예: 자본금, 소유시설, 법적 대표자, 세금신고 현황에 대한 정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경우, 수상한 거래가 있는 경우 등
- 그룹 II. 위험 징수가 있어 계산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심사 대상리스트에 포함해야 한 납세자를 결정하는 기준: 고정자산 비율/정관자본 비율, 낮은 부가가치세액 ("VAT")/수익비율...
- 그룹 III. 위험 징수가 있어 계산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심사 대상리스트에 포함해야 한 납세자를 결정하기 위해 참조 기준:

(GDT의 2023년 2월 2일 제78/QD-TCT호 결정)

2023년 부가가치세 (VAT), 법인세 (CIT), 개인소득세 (PIT) 및 토지임대료 납부 기한 연기

2023년 4월 13일, 정부는 2023년 VAT, CIT, PIT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기에 관한 제12/2023/ND-CP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 적용대상: 2022년 5월 28일 제34/2022/ND-CP호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모든 적용대상에 대해 계속 연기하는데 "베트남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기업, 조직 및 개인 고객을 지원 솔루션을 구현하는 신용 기관, 외국 은행 지점"을 제외한다.
- 납부기한 연기된 세금은 아래와 같다:
 - (i) VAT: (수입 VAT 제외):
 - ✓ 2023년 3월, 4월, 5월 및 2023년 1분기: 6개월 연기
 - ✓ 2023년 6월 및 2023년 2분기: 5개월 연기
 - ✓ 2023년 7월: 4개월 연기
 - ✓ 2023년 8월: 3개월 연기
 - (ii) 2023년 1분기 및 2분기 잠정 CIT 납부: 3개월 연기
 - (iii) 2023년에 발생한 개인 및 가족 사업자에 대한 VAT 및 PIT 납부기한: 2023년 12월 30일까지 연기
 - (iv) 2023년 분 토지 임대료: 2023년에 납부해야할 금액의 50%에 대해 06개월 납부기한 연기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본 시행령은 서명일로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

(정부의 2023년 4월 13일 제12/2023/ND-CP호 시행령)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사용가능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생산과정의 불량품 폐기

회사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폐기할 경우 CIT 법규정에 의해 규정한 폐기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폐기된 불량품의 가치가 CIT 목적상 공제 불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된다.

(세무총국의 2023년 3월 20일 제796/TCT-CS호 OL)

유통업체의 소매점에 대한 현금 지원

회사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유통업체 (회사의 상품을 직접 구매)와 유통업체의 소매점 (유통업체를 통해 상품 구매)의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소매점이 회사와 계약한 판매 목표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소매점에 현금 지원하며 소매점의 영업사원 (회사 직원이 아님)에게 현금 보너스를 지급한다. 이러한 지원비용은 CIT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으로 처리한 근거가 부족하다.

(세무총국의 2023년 3월 20일 제786/TCT-CS호 OL)

공장 임대 활동에 대한 CIT 인센티브

회사는 지역별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여 CIT 인센티브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프로젝트가 사회 경제적 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산업단지내 위치함) 투자허가서상 프로젝트의 목적과 규모에 맞춰서 공장 임대하면 (토지를 재임대하지 않음) 공장 임대 소득은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4월 6일 제6120/CTBDU-TTHT호 OL)

투자 기간의 환율 차이로 인한 소득은 CIT 인센티브 대상이 아님

인센티브를 받은 신규투자 프로젝트가 생산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투자기간에 환율 차이로 인한 소득은 프로젝트의 생산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며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Bac Ninh 세무국의 2023년 3월 22일 제819/CTBNI-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사용가능

간접세 신규 규정

2023년 부가가치세 (“VAT”) 감소에 대한 결의 초안

정부는 2023년 VAT 감면과 관련하여 국회 결의 초안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VAT 10%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2% 감면 (8%로 적용)
 - 수익에 대한 비율로 VAT를 계산하는 사업업체의 경우 VAT 계산 비율에 20% 감면 적용
- 결의는 서명일로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효할 예정이다.

(국회의 결의 초안)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사용가능



간접세 지침 문서

종속단위에서 사용하는 계산서에 대한 규정

회사는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 13조 4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종속단위가 있는 경우 종속단위는 전자계산서 사용을 해당 관리세무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계산서상 판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가 종속단위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종속단위가 별도의 계산서 사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품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할 때 회사 이름으로 전자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발행하도록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3월 20일
제12768/CTHN-TTHT호 OL)

해외조직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VAT

기업이 해외조직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서비스가 베트남 영토외 에서 소비되는 경우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 9조 2b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제130/2016/TT-BTC호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VAT 0%가 적용된다.

기업이 해외조직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베트남 영토외 에서 소비되지 않는 경우 VAT 0%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3월 20일
제12772/CTHN-TTHT호 OL)

두 단계로 분리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

기업은 여러까지의 투자항목을 2 단계로 분리되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있고 그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단계 중인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비즈니스 활동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VAT에 상계 후 투자 프로젝트의 누적 매입 VAT 잔액은 VND 3억 이상으로 남아 있다
- 조건부 산업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공제 조건, 세금 환급 조건을 충족한다

(세무총국의 2023년 3월 20일
제804/TCT-CS호 OL)

비관세구역에 건설공사 서비스에 대한 VAT 환급

회사가 비관세구역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서비스는 제219/2013/TT-BTC호 시행령 제9조 2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서비스로 간주되며 VAT 0% 적용된다.

서비스가 수출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고 기업이 월/분기에 VND 3억 VND 이상의 미공제 매입 VAT 금액이 있는 경우,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조건 및 절차를 충족하면 월/분기별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3월 30일
제15743/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사용가능



근로자 및 개인소득세 신규 규정

사회보험 가입 절차 및 사회보험료 연체납부 또는 납부 회피 처리 절차에 대한 개정

28일 3월 2023일 제 490/QD-BHXH 호 결정서 제8.2조의 개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로 부터 Form TK1-TS를 받은 후에 Form TK3-TS, Form D02-LT를 작성하고 유관기관에 의한 정보 조정서류의 사본 및 근로자의 자료를 첨부해서 근로계약서, 채용 결정의 서명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에 하드 카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사회보험료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보험료 징수 관리/ 보험책-카드 관리부서/팀의 담당자가 10일마다 통지서를 발송하여, 2회 통지서 발송후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비정상 조사 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9조 2항).

이 결정서는 2023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베트남 사회보험 기관의 2023년 3월 28일 제 490/QD-BHXH 호 결정서)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사용가능



근로자 및 개인소득세 ("PIT") 신규 규정

지침 문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입국, 출국, 국경통과 및 체류 관리에 관한 일부의 정책에 대한 결의안 초안

정부는 다음을 포함한 외국인 이민 관리의 일부 정책을 검토하여 제5차 회기 (2023년 5월)의 공동 결의안에 포함을 위해 국회에 제출도록 법무부와 협의한 것을公安부가 주요 책임을 지도록 지정했다.

- 모든 국가 및 영토지역의 시민에게 전자 비자를 발급한다;
- 전자 비자 기간을 30일에서 03개월로 늘리며, 단수비자 (One time visa) 또는 복수비자 (Multiple Visa)에 적용한다;
- 일방적인 비자 면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국경에서 발급하는 임시거주증의 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늘린다.

(정부의 2023년 3월 31일 제/No. 46/NQ-CP 호 결의서)

근로자에게 상 수여에 대한 PIT 공제

근로자가 우수한 성과로 회사한테서 현금 또는 현물 형식으로 받은 상금 소득은 2013년 8월 15일 제111/2013/TT-BTC 호 시행규칙 제 2.2 조에 따른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PIT 를 공제하고 세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3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누진세율로 PIT 공제)

(Hanoi 세무국의 2023년 4월 10일 제 20479/CT-TTHT호 OL)

상품홍보를 위한 개인의 채용에 대한 PIT

회사가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개인과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PIT의무가 다음과 같다:

- 광고를 수행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광고소득은 급여, 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회사가 제 111/2013/TT-BTC 호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누진세율 (3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이 있는 개인의 경우) 또는 10% (근로계약이 없거나 3개월 미만인 계약이 있는 개인의 경우)로 PIT 를 공제한다.
- 광고를 수행하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광고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간주되며, 제4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10조, 부록 I (VAT 5%, PIT 2%)에 따라 과세된다.

(Hanoi 세무국의 2023년 2월 28일 제 8205/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사용가능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문서



베트남에서 창출한 외국인 계약자의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 (“DTA”) 적용

외국인 계약자는 베트남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한 소득을 얻으면 해당 서비스는 VAT 및 CIT를 포함한 FCWT 부과된다.

- 외국인 계약자가 양국 간 DTA 규정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형성하지 않을 조건을 충족하면 CIT 가 면제된다. (VAT가 면제되지 않는다).
- DTA 에 따른 세금감면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약자 또는 외국인 계약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위임된 단체/개인이 재무부의 2021년 9월 29일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감면 적용 통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4월 07일 제 6239/CTBDU-TTHT호 OL)

해외시장으로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는 FCWT의 대상이 아님

베트남 회사가 해외시장으로 상품, 서비스의 판매를 위해 고객모색,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 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재무부의 제 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FCWT 과세대상이 아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4월 7일 제 6241/CTBDU-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사용가능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주목할 만한 내용

특별한 수출입 상품 목록 업데이트

공상부 ("MOIT")는 2023년 3월 31일에 제 08/2023/TT-BCT 호 시행규칙 ("제 08호 시행규칙" 을 발행하여 다음을 포함한 특별 수출입 상품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 수입이 금지된 소모품, 의료 장비 및 중고 차량의 목록 및 HS 코드의 세부 정보 (제12/2018/TT-BCT호 시행규칙의 부록 I 대체);
- 일시적인 수입 - 재수출 거래 및 해외화물의 환적이 일시 중단된 상품의 목록 및 HS 코드의 세부 정보 (제12/2018/TT-BCT호 시행규칙의 부록 II 대체);
- 수출된 논과 벼에 대한 HS코드별 세부 목록 (제 41/2019/TT-BCT 호 시행규칙 부록I 대체);
- 담배 원자료 및 담배 종이에 대한 HS 코드별 세부 목록 (제 41/2019/TT-BCT호 시행규칙의 부록 VI 대체);
- 담배 산업에 특화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HS 코드별 세부 목록 (제41/2019/TT-BCT호 시행규칙의 부록 VII 대체).

제08호 시행규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발효한다.

(MOIT의 2023년 3월 31일 제/08/2023/TT-BCT 호 시행규칙)

통관 후 관세심사활동에 대한 업데이트

세계 경제의 복잡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베트남의 많은 핵심 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 관세 총국 ("GDC")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관 후 관세심사 (PCA) 활동 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2023년 PCA 계획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강제적인 이유 없이 PCA를 수행하지 않다;
- PCA 활동을 처리하는 관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향상시키며, 위험 및 위반 주제별 PCA 계획을 우선적으로 연구 및 개발한다.
- 2019년 3월 21일 제 575/QD-TCHQ호 결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PCA 프로세스의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

(GDC의 2023년 4월 18일 제 1796/TCHQ-KTSTQ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사용가능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재수입 수출품은 여전히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이전에 수출되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수입된 상품은 특별소비세 ("SCT") 가 면제되지 않는다 (SCT 과세대상인 경우). 따라서 기업들은 그러한 상품을 재수입할 때 여전히 특별 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GDC의 2023년 4월 4일 제 1500/TCHQ-TXNK 호 OL)

수입품에서 발생한 수출 스크랩은 여전히 수출 관세가 부과됨

관세총국 ("GDC") 의 의견에 따르면 기업이 수입 원자료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은 여전히 수출 관세 부과되며 관세면제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다.

(GDC의 2023년 3월 29일 제 1400/TCHQ-GSQL 호 OL)

C/O Form D 적용 관련 유의사항

ATIGA 회원국은 2023년 3월 31일까지 2017 HS코드를 사용한 C/O (종이 C/O, 전자 C/O, 자체 인증 C/O 포함)를 허락한다. 2023년 4월 1일부터 기업이 2022 HS 코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유효하지 않은 소급 발급된 C/O (13번째 항목 "Issued Retroactively"를 선택하지 않음):

- 전자 C/O는 유효성 검토, 관세 신고서 및 기타 수입 서류의 확인결과에 따라 상품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경우에 허락된다;
- 종이 C/O는 이 단계에서 거부되지 않고, 대신에 관세감독 행정부에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GDC의 2023년 3월 15일 제 1163/TCHQ-GSQL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상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 사용가능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